

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
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

대표자,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

1.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(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 등)에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2.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3.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.
5. 등급 변경, 등급갱신, 계약기간 종료,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6.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7.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-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나. 계약목적

1.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다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
(1)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(2)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, 등급 외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대표가 체결한 금액으로 한다.

(3)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식재료비(비급여비용)만 받는다.

(4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 경감한다.

(5)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. 서식과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
마. 비용부담의 방법 :

1.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.
2.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5일에 정산하고,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한다.
3.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.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
1.신원인수인의 권리

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
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
다)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

라)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

2.신원인수인의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나)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
- 다)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바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사)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(변경 시 즉각 알림)

사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.

- (1)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(2)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(3)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4)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(5)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(6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(7)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(8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(9) 6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(10)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(11)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

아. 수급자(보호자)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‘시설’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자. 이용료 등 수납 -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.

차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(3)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- 가.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나.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다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라. 변경절차는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

(4) 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- (1) 일상생활지원 : 일상생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한다.
- (2) 건강관리 :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이탈 체크와 혈당관리 서비스 제공한다.
- (3) 위생관리 : 세안, 양치, 목욕서비스, 이미용서비스 등
- (4) 식사제공 : 아침(죽),점심,저녁, 간식서비스의 제공 *아침은 식사비를 받지않고 원하시는 어르신만 제공해드림

(5) 상담서비스 :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파악한다.

나.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(1)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면제하며 비급여발생만 청구한다,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% 또는 40% 경감한다.

(2)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.

(3)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